

#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3. 9. 18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9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154호)

나. 회부일자: 2023. 8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【2023. 9. 6. 상정·원안가결】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신신재 기획재정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관내 노후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(신·증·개축 등)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

나. 주요내용

○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3조
- 2) 설치목적 :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
- 3) 설치연도 : 1995. 3. 6.

○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1) 기금사업의 목표

- 구, 동, 보건소,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(신·증·개축, 재건축, 이전신축 포함)에  
필요한 경비 지원

-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, 기본조사 설계, 실시설계,  
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경비 지원

## 2)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공용청사 신·증축(성북동, 돈암1동, 길음2동, 정릉2·3동) : 10,446,798천원
- 공공시설 건립(보문동, 길음동) : 2,200,000천원

다. 2023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### 1) 기금변경규모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| 기정예산        | 변경예산        | 증감액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기금규모(수입·지출) | 107,729,961 | 133,255,138 | 25,525,177 |

### 2)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#### ○ 수입계획변경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| 기정예산(A)     | 변경예산(B)     | 증감액(B-A)   | 증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| 107,729,961 | 133,255,138 | 25,525,177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치금회수    | 91,069,961  | 91,069,961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회계 전입금 | 14,000,000  | 37,985,177  | 23,985,177 | (증)제1회 추경 일반회계<br>기금 전출금 증가 |
| 이자수입     | 2,660,000   | 4,200,000   | 1,540,000  | (증)예치금 증가에 따른<br>이자 증가 예상분  |

## ○ 지출계획변경

(단위 : 천 원)

| 구 분    | 기정예산(A)     | 변경예산(B)     | 증감액(B-A)   | 증감내용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계      | 107,729,961 | 133,255,138 | 25,525,177 |              |
| 사무관리비  | 54,840      | 54,840   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시설비    | 12,467,798  | 12,467,798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자산취득비  | 25,000      | 25,000   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기타자본이전 | 100,000     | 100,000   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예치금    | 95,082,323  | 120,607,500 | 25,525,177 | (증)연도말 기금조성액 |

## 3)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 원)

| 조 성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 용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년말 조성액(잔액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33,255,1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,647,6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,607,500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치금 : 91,069,961</li> <li>전입금 : 37,985,177</li> <li>이 자 : 4,200,000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원회 운영 : 840</li> <li>공용청사 : 10,446,798</li> <li>공공시설 : 2,200,000</li> </ul> | 2024년도 이월      |

## 3. 참고사항

##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##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진만)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,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<sup>1)</sup>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 기정예산 1,077억 2,996만원보다 23.69%인 255억2,617만원 증액된 1,332억5,513만원으로 변경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.
-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13조<sup>2)</sup>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(신·증·개축, 재건축 포함) 경비 및 부대경비, 공용청사 및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13조(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)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, 공공체육시설, 주민편익시설 등(이하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(개정 2020.5.14, 2020.12.31.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20.5.14.)

1. 일반회계 전입금 (구세 및 세외수입의 1% 이상) (개정 2017.12.28, 2020.5.14, 2020.12.31.)
2. 교부금 및 보조금 (개정 2020.5.14.)
3. 삭제 (2017.12.28.)
4. 기금운용 수익금 (개정 2020.5.14.)
5. 그 밖의 수입금 (개정 2020.5.14.)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0.5.14.)

1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(신·증·개축, 재건축 포함) 경비 (개정 2020.5.14.)
2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(개정 2020.5.14.)
3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(신설 2020.5.14.)
4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(신설 2020.5.14.)
5. 기금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 (신설 2020.5.14.)

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및 부지매입비, 기금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 등임.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노후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 략」**

#### **5. 토론요지 : 「생 략」**

#### **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**

#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3. 9. 18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9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155호)

나. 회부일자: 2023. 8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【2023. 9. 6. 상정·원안가결】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신신재 기획재정국장)

#### 1. 제안이유

-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에 예탁하여, 향후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
-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축소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예수금 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
- 2) 설치목적 :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
- 3) 설치연도 : 2020. 12. 31.

## 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### 1) 기금사업의 목표

○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

### 2)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○ 건축안전특별회계 여유자금 통합관리 : 2,633,043천원

○ 일반회계 여유자금 통합관리 : 40,000,000천원

## 다. 2023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### 1) 기금변경규모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| 기정예산      | 변경예산       | 증감액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기금규모(수입·지출) | 5,018,104 | 42,933,043 | 37,914,939 |

### 2)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#### ○ 수입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| 기정예산(A)   | 변경예산(B)    | 증감액(B-A)   | 증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| 5,018,104 | 42,933,043 | 37,914,939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치금회수 | 2,059,408 | 2,059,408  | -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수금수입 | 2,822,696 | 40,573,635 | 37,750,939 | (증)일반회계 40,000백만원<br>(감)건축안전 2,249백만원 |
| 이자수입  | 136,000   | 300,000    | 164,000    | (증)예수금 증가에 따른<br>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         |

#### ○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기정예산(A)   | 변경예산(B)    | 증감액(B-A)   | 증감내용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계   | 5,018,104 | 42,933,043 | 37,914,939 |              |
| 예치금 | 5,018,104 | 42,933,043 | 37,914,939 | (증)연도말 기금조성액 |

### 3)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| 조성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사용액 |   | 2023년말 조성액(잔액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42,933,0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   | 42,933,043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치금 : 2,059,408</li> <li>예수금 : 40,573,635</li> <li>이 자 : 300,000</li> </ul> | - | 0   | = | 2024년도 이월      |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#####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진만)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,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<sup>3)</sup>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 기정예산 50억

3)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1,810만원보다 379억1,493만원(755.56%)이 증액된 429억3,304만원으로 변경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.

-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7조부터 제12조(별첨 1)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4)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것임.

4)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20. 6. 9.]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 략」**

#### **5. 토론요지 : 「생 략」**

#### **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**

#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3. 9. 18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9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157호)

나. 회부일자: 2023. 8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【2023. 9. 7. 상정·원안가결】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맹홍재 안전생활국장)

#### 1. 제안이유

- 2022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및 사업 계획 변경으로 2023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1) 설치연도 : 1995년

2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2조

3) 설치목적 :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쓰레기 감량 목표

※재원조성 :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판매수입의 일부

4) 사업내용 :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 사업

나.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개요

1) 운용계획 변경 사유

가)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(증 10,327천원)

- 기타사업수입 및 이자 증가(증 5,926천원)

- 재활용 관련 사업 지출 감소(감 4,401천원)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         | 2021년도 말<br>조성액(A) | 2022년도 조성계획 |        |        | 2022년도 말<br>조성액(A+B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수입          | 지출     | 증감(B)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당초계획        | 40,414             | 15,344      | 8,560  | 6,784  | 47,198               |
| <b>결산반영</b> | 40,414             | 21,270      | 4,159  | 17,111 | 57,525               |
| 증감액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| 5,926       | ▽4,401 | 10,327 | 10,327               |

나) 2023년도 수입계획 증가(증 53,042천원)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| 기정예산(A) | 변경예산(B) | 증감액<br>(B-A) | 증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| 29,736  | 82,778  | 53,042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3년 기타수입 | 28,836  | 79,358  | 50,522       | - 재활용품판매대금 기<br>금의 수입금 조정으로<br>인한 수입 및 이자 증가 |
| 이자수입       | 900     | 3,420   | 2,520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재활용선별장 대행용역 계약(2022.12.29.)

-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 수입 산출 변경

| 기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가성 재활용품 (kg) × 10원<br>(폐비닐(EPR) 잔재폐기물 제외) | ▶ 혼합수거재활용폐기물(kg) × 40% × 15원 |

다) 2023년도 지출계획 감소(감 13,920천원)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정예산(A) | 변경예산(B) | 증감액<br>(B-A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41,510  | 27,590  | ▽13,920      |
| 심의위원 운영수당                  | 560     | 840     | 280          |
| 폐형광등/폐건전지 등 수거함 교체         | 9,750   | 9,750   | -            |
| 재활용품 보관장비구입                | 6,000   | 2,000   | ▽4,000       |
| 재활용품 수거활성화를 위한<br>사업홍보물 제작 | 10,000  | 10,000  | -            |
| 재활용정거장용 분리수거함 구매           | 10,200  | -       | ▽10,200      |
| 재활용정거장 관련 홍보물 제작           | 5,000   | 5,000   | -            |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예정에 따른

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반영(증 280천원)

- 정릉도시관리지원센터 보강공사, 대행업체 차량통행 등 여건  
변경으로 컨테이너 구입 대신 장비 구입으로 변경(감 4,000천원)
-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분리수거함 구매 예산 확정으로 삭감(감10,200천원)

## 2) 2023년 운용계획 변경 내역

### 가) 기금조성총괄 변경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         | 2022년도 말<br>조성액(A) | 2023년도 조성계획 |         |         | 2023년도 말<br>조성액(A+B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수입          | 지출      | 증감(B)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당초계획        | 47,198             | 29,736      | 41,510  | ▽11,774 | 35,424               |
| <b>변경계획</b> | 57,525             | 82,778      | 27,590  | 55,188  | 112,713              |
| 증감액         | 10,327             | 53,042      | ▽13,920 | 43,414  | 77,289               |

### 나) 자금수지총괄 변경

(단위 : 천원)

| 수입계획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| 지출계획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항목    | 당초계획수입액 | <b>변경수입액</b>   | 증감     | 항목      | 당초계획지출액 | <b>변경지출액</b>   | 증감      |
| 합계    | 76,934  | <b>140,303</b> | 63,369 | 합계      | 76,934  | <b>140,303</b> | 63,369  |
| 예치금회수 | 47,198  | <b>57,525</b>  | 10,327 | 예치금     | 35,424  | <b>112,713</b> | 77,289  |
| 이자수입  | 900     | <b>3,420</b>   | 2,520  | 비용자성사업비 | 41,510  | <b>27,590</b>  | ▽13,920 |
| 기타수입  | 28,836  | <b>79,358</b>  | 50,522 | 이 하 여 백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
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진만)

○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재화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,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,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<sup>5)</sup>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

---

#### 5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 당초계획 7,693만원보다 6,336만원(82.37%)이 증액된 1억4,030만원으로 변경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- 성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2조6)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성북구가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,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이며,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·선별에 따른 장비,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등임.
-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 략」**

#### **5. 토론요지 : 「생 략」**

#### **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**

---

##### **6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**

제22조(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) ①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(개정 2020.12.31.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20.12.31.)

1. 구가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
2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(개정 2020.12.31.)
3. 그 밖의 잡수입 등 (개정 2020.12.31.)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0.12.31.)

1. 재활용품 수집·선별에 따른 장비,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
2. 그 밖의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(개정 2020.12.31.)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3. 9. 18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9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160호)

나. 회부일자: 2023. 8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【2023. 9. 8. 상정·원안가결】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한재현 행정문화국장)

#### 1. 제안이유

○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,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30조
- 2) 설치목적 :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
- 3) 설치연도 : 2023년

##### 나. 기금운용 개요

##### 1) 기금재원(수입)

-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기부금
-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## 2) 기금용도(지출)

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-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-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## 3)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2023년 모금된 기부금 전액 예치

## 4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| ' 22년도말<br>조성액 ㉠ | ' 23년도 기금운용계획 |     |             | ' 23년도말<br>조성액<br>㉡=㉠+㉢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| 수입㉢           | 지출㉣ | 증감<br>㉤=㉢-㉣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               | 12,064        | -   | 12,064      | 12,064                  |

## 다. 자금운용계획

### 1) 자금수지 총괄

(단위 : 천원)

| 수입계획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지출계획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항 목              | ' 23년<br>수입액 | 전년도<br>수입액 | 증 감    | 항 목          | ' 23년<br>지출액 | 전년도<br>지출액 | 증 감    |
| 합 계              | 12,064       | -          | 12,064 | 합 계          | 12,064       | -          | 12,064 |
| 전입금              | 9,705        | -          | 9,705  | 비용자정<br>사업비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보조금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용자정<br>사업비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차입금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인력운영비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융자금회수<br>(이자 포함)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기본경비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예탁금<br>원금회수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예탁금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예치금회수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예치금          | 12,064       | -          | 12,064 |
| 예수금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 차입금<br>원리금상환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이자수입             | 64           | -          | 64     | 예수금<br>원리금상환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| 기타수입             | 2,295        | -          | 2,295  | 기타지출         | -            | -          | -      |

## 2)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| 장   | 관   | 항   | 목                | '23년<br>수입액 | 전년도<br>수입액 | 증 감    |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0 |     |     | 세외수입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210 |     | 경상적세외수입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216 | 이자수입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    | 216-01 공공예금 이자수입 | 64          | -          | 64     | 구금고 예치금<br>이자수입                |
|     | 220 |     | 임시적세외수입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216 | 기타수입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    | 224-03 기부금 수입    | 2,295       | -          | 2,295  | 기금설치 후 기부금<br>수입               |
| 700 |     |     |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720 |     | 내부거래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721 | 전입금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    | 721-03 기타회계 전입금  | 9,705       | -          | 9,705  | 기금설치 전 기부금<br>수입<br>(일반회계 전입금) |
|     |     |     | 수 입 합 계          | 12,064      | -          | 12,064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3)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| 조직 | 부문 | 정책 | 단위 | 세부 | 편 성 목        | '23년<br>지출액 | 전년도<br>지출액 | 증감     |
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   |    |    |    |    | 자치행정과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|    |    |    |    | 재정·금융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|    |    |    |    | 재무활동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|    |    |    |    | 보전지출(고향사랑기금)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|    |    |    |    | 602 예치금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    |    |    |    |    | 602-01 일반예치금 | 12,064      | -          | 12,064 |
|    |    |    |    |    | 지 출 합 계      | 12,064      | -          | 12,064 |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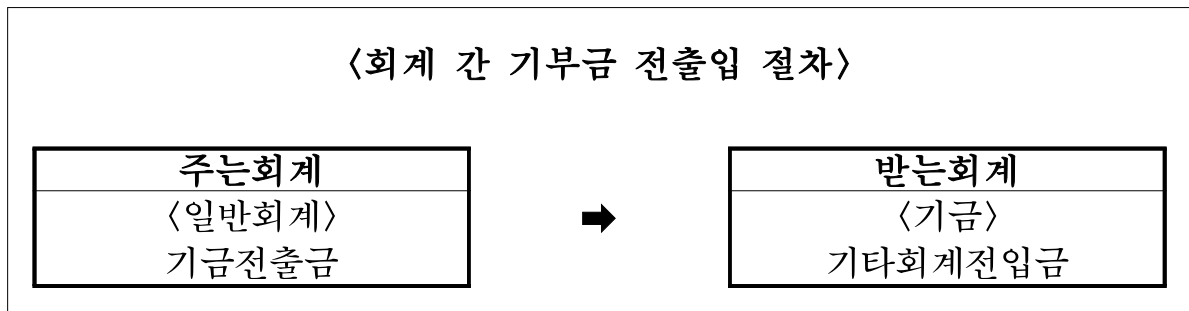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- 2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- 3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(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)
- 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

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
5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

나. 예산조치

- 1) 기금 설치 전 모금된 기부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(과목: 기부금수입)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,
- 2) 기금 설치 후에는 기 모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, 새로 모금되는 기부금은 기금으로 직접 수입처리 예정임

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    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정진만)

○ 본 운용계획안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,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·운용을 위하여 ‘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’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<sup>7)</sup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<sup>8)</sup>에 따라 성북구의회

7)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8) 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

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고향사랑기금 추진경위를 보면,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(2023. 1. 1) 되었으며,

○ 우리구에서는 관계 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지급,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, 2023년 4월 20일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였음.

○ 2023년 7월 13일,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<sup>9)</sup>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<sup>10)</sup>에 따라

---

분하여 작성할 것

2.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·부문·정책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9)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고향사랑기금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라 모집·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0) 제13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.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<sup>11)</sup> ‘고향사랑기금’ 설치 운용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음.

○ 2023년 고향사랑기금 조성은 1,206만원(전입금 970.5만원, 이자수입 6.4만원, 기타수입 229.5만원)으로 모금된 기부금 전액을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,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 있는 답례품과 홍보를 통해 기부금 규모를 확대하고 주민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 략」**

#### **5. 토론요지 : 「생 략」**

#### **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**

11) 제30조(고향사랑기금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이 조에서 “고향사랑 기부금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3.7.13.]